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390호 1999. 6. 8.

개 정 이 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1999. 1. 29, 법률 제 5730호 및 1999. 4. 15, 법률 제5969호)되어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기점검의 회수를 줄이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회수를 분기 1회이상에서 평균 1회 이상으로, 교량의 정밀점검의 회수를 매년 1회이상에서 2년마다 1회이상으로 줄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폐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시에 대한 시설물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임(령 제6조).
- 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령 제9조제4항 신설).
- 다. 종전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물을 일률적

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적은 시설물 등은 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안전진단업체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

라. 종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에 한정하였으나, 건설기술자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는 경력자도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기점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령 별표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중 “정기점검실시시기”를 “정밀점검실시시기”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같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본문중 “시설물”을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지정신청”을 “등록신청”으로, “지정한다.”를 “등록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등록증교부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침출수의 유출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제15호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1. 도로중 시도·군도 및 구도
2. 철도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2호(철도)의 ◦도시철도의 1종시설물란중 “하저터널”을 “터널”로 하고, 동호의 ◦도시철도의 2종시설물란중 “1종시설물외의 터널 및 역사”를 “역사”로 하며, 동표 제6호(하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	◦ 하구둑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직할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직할 하천의 수문	◦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수문
 •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직할·지방하천의
 수문

별표 1 제7호(상하수도)의 1종시설물란중 “광역상수도 및 부대시설”을 “광역상수도”로, “공업용수도 및 부대시설”을 “공업용수도”로 하고, 동호의 2종시설물란중 “지방상수도 및 부대시설”을 “지방상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일상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하고, 동란의 정기점검(중전의 일상점검)의 기술자격자란중 “토목·건축분야”를 각각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로 하며, 동란의 정기점검(중전의 일상점검)의 학력·경력자란의 마지막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 건설기술관련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의 구분란중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하고, 동란의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중전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기술자격자란중 “토목·건축분야”를 각각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4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및 표중 “지정요건”을 각각 “등록요건”으로 하고, 동표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중전의 지정요건)란 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별표 3의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전문분야의 안전진단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기술사급 인력을 제외한다)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일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자나 학력·경력자는 그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인력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29조제4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1항	7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1호	300만원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2호	100만원
4.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44조제2항 제3호	100만원
5.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1항 제4호	100만원
6.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5호	300만원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6호	100만원
8.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7호	200만원
9.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서류 열람 또는 사본교부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8호	200만원
10.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4조제2항 제9호	100만원